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2011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기획재정국	1

( 2012. 7. 4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명 금 길 ]**

## **1. 안 건 명**

가. 2011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6월 12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2년 6월 14일

나. 의안번호 : 12-46

##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 2011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예산과목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결정액 대비
합 계	315,881,575,352	358,229,971,825	328,679,693,125	104.05	91.75
지방세수입	73,199,377,000	78,680,846,070	77,701,437,840	106.15	98.76
세 외 수 입	81,310,560,352	119,417,815,325	90,846,944,855	111.73	76.07
지방교부세	5,109,252,000	4,199,687,000	4,199,687,000	82.20	100.00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68,575,115,000	69,586,440,320	69,586,440,320	101.47	100.00
보 조 금	87,687,271,000	86,345,183,110	86,345,183,110	98.47	100.00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불용율
기획재정국	11,095,437,870	8,204,596,392	0	2,890,841,478	73.95	26.10
기획예산과	4,517,877,000	2,658,716,848		1,859,160,152	58.85	41.15
지역경제과	1,663,732,500	1,391,598,290		272,134,210	83.64	16.36
재무과	640,774,000	479,163,100		161,610,900	74.78	25.22
전산정보과	2,892,467,370	2,529,663,824		362,803,546	87.46	12.54
세무1과	574,569,000	467,960,570		106,608,430	81.45	18.55
세무2과	806,018,000	677,493,760		128,524,240	84.05	15.95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2,890,841,478	192,346,100	213,565,000	1,186,718,678	108,331,700	1,189,880,000
기획재정국	2,890,841,478	192,346,100	213,565,000	1,186,718,678	108,331,700	1,189,880,000

○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원)

부서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1	6,600,000	5,843,600	5,843,600	0	756,400
지역경제과	1	6,600,000	5,843,600	5,843,600	0	756,400

[검토보고]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 201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6억 5,864만 5,352원이 포함된 3,158억 8,157만 5,35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86억 7,969만 3,12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로 초과 징수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582억 2,997만 1,825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1.7%로서 전년도 91.4%에 비해 0.3% 증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다소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980억 9,866만 1,395원 이고 실제 수납액은 1,685억 4,838만 2,695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5.1%로 전년도의 84.6% 보다 0.5%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의 지원 감소추세에 따라 감소액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감축 및 실행예산 편성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꾸준히 징수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의 지난년도 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3억 4,233만 1,720원 대비 약 67.2%에 해당하는 9억 198만 4,810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42.2%보다 실제징수율이 무려 25% 증가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6억 5,196만원의 약 138.4 %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의 103.5% 보다 34.9% 증가하여 평균 수납실적으로 볼 때는 계속 상향하고 있어,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동시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0억 9,543만 7,870원이 되겠으며 이중 82억 459만 6,392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26.1%에 해당하는 28억 9,084만 1,478원으로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9,234만 6,100원, 예산절감 2억 1,356만 5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1억 8,671만 8,678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33만 1,700원, 예비비 집행잔액 11억 8,988만원 등이 되겠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2011회계연도 마포구 예비비 예산 총액은 408억 8,64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7건에 17억 9,045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6,956만 9,582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총액대비 0.3%에 해당하는 1억 2,088만 2,418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하였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는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로서 66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584만 3,600원이 지출되고, 75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

- 2011회계연도 마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86억 4,228만 4,129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27억 2,783만 8,159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38억 6,665만 3,390원이며 차입잔액은 375억 346만 8,898원이 되겠으며,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1,134만 4,466원에 당해연도 36억 6,299만 9,920원이 조성되어 33억 363만원이 지출되고 3억 5,936만 9,92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14억 7,071만 4,386원이 되겠고,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32억 3,235만 3,743원에 당해연도 21억 7,688만 5,392원이 조성되어 8억 5,188만 5,392원이 지출되고 13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245억 5,735만 3,743원이 되겠고,

아울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95쪽~ 4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람.